



보고서 이외의 사항은 공익목적에 한하여 “컨설턴트”와 “소상공인”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다.

④ “컨설턴트”는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,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다. 다만, 사전에 “관리기관”과 “소상공인”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.

제12조(하도급 금지) “컨설턴트”는 “관리기관”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.

제13조(산출물에 대한 권리) 본 컨설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종결과물 및 기타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, “컨설턴트”가 컨설팅비용 전부를 “관리기관”으로부터 지급 받음과 동시에 “관리기관”과 “소상공인”에게 귀속되며, 우수한 컨설팅 사례의 전파 확산을 위해 온라인 게재, 사례집 발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.

제14조(일반적 손해) “소상공인”과 “컨설턴트”는 사업의 수행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“관리기관”과 성과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 다만,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또는 거래상의 관습에 의한다.

제15조(사위행위 및 컨설팅 참여 제한) ① “소상공인”과 “컨설턴트”가 공모하여 허위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컨설팅과 관련된 사위행위를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, “소상공인”은 자부담금을 환불받을 수 없으며, “컨설턴트”는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거나, 이미 지급 받은 컨설팅비용은 “관리기관”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

② “컨설턴트”에 의한 컨설팅 진행 또는 완료 후에도 “소상공인”에 의한 “컨설턴트”의 컨설팅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컨설팅을 무료로 재지원 받을 수 있다. 단, 문제제기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, “컨설턴트”은 컨설팅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.

③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“컨설턴트”는 컨설팅사업 참여제한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.

제16조(관계법령의 준수) ① “소상공인”과 “컨설턴트”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, “관리기관”의 운영지침 등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과 “관리기관”의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“관리기관”과 “소상공인” 및 “컨설턴트”는 변경된 법령 등을 본 협약에 적용한다.

제17조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“소상공인”과 “컨설턴트”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, 협약서의 효력은